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3
----------	-----

2019. 9. 2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정상교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8월 22일

-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상교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축적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,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남북교류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광영학)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(현재 15명 이내 → 개정 25명 이내) 교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※ 충청남도: 30명, 강원도: 20명, 전라북도: 20명, 경상남도: 20명

○ 남북교류 분야는 매우 다양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교류를 주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24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정상교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8월 13일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상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8월 13일

발 의 자 : 정상교, 전원표, 허창원,
송미애, 연철흙, 이옥규,
오영탁

1. 개정이유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축적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
- 실무위원회(문화·체육·경제·농업 등)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- 남북교류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·체육·경제·농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실무추진단) 남북교류협력사업의 <u>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추천을 통해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.</u></p>	<p>제20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·체육·경제·농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
제12조(남북한 거래의 원칙)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.

제24조(남북교류·협력의 지원) 정부는 남북교류·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·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